## 학생공상처리규정

- 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) 재학생이 공상으로 치료를 요할 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에서 보조함으로써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04.3.1.)
- 제2조(공상의 기준) 공상으로 처리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단, 공식행사 중 입은 부상이라도 그 행사와 무관하거나 학생의 고의성과 현저한 부주의에 의한 부상은 예외로 한다.
  - 1. 교내수업 중 부상을 당한 경우
  - 2. 교내의 시설물에 의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
  - 3.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외 행사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
  - 4. 기타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식 행사 및 활동 중 부상을 당한 경우
- 제3조(관장) 공상처리에 관한 업무는 학생처 <u>학생·장학봉사팀</u>에서 관장한다. (개정 2011.4.18, 2012.8.1., 2014.3.28.,2017.10.01.,**2022.4.1.**)
- 제4조(수혜의 자격) 등록을 필한 본 대학교의 재학생에게 수혜자격이 주어지며, 본 대학교의 재학생 신분을 떠남과 동시에 수혜의 자격이 상실된다. 단, 본 규정에 따른 진료 도중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. (개정 2004.3.1)

제5조(위원회) (삭제 2004.3.1)

제6조(위원회구성) (삭제 2004.3.1)

제7조(위원회의 회의) (삭제 2004.3.1)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(삭제 2004.3.1)

- 제9조(공상처리절차) ① 본 대학교 학생이 제2조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 즉시 학생처로 통보하고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 (개정 2011.4.18, 2012.8.1.)
  - 1. 교내에서 치료 가능 여부의 확인을 받는다.
  - 2. 교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다.
  - ② 학생이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부상을 교외에서 당한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  - 1. 부상당한 즉시 학생처로 통보한 후 적절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부상이 경미한 경우에 는 익일 학생처에 신고할 수 있다. (개정 2011.4.18, 2012.8.1.)
  - 2. 학생처에서는 부상 통보를 받으면 현장을 확인한 후 학생처장이 공상 처리가 타당하다고 결

정하면 공상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토록 한다. (개정 2011.4.18, 2012.8.1.)

- 3. 학생이 공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진료비를 학생처를 통하여 보험사에 청구한다. (개정 2011.4.18, 2012.8.1.)
  - 가. 보험금청구서
  - 나. 사고경위서
  - 다. 의료비영수증
  - 라. 진단서
  - 마. 재학증명서

제10조(공상처리의 제한) 제9조의 절차 및 학칙을 위반한 학생은 공상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11조(치료비지급) 학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진료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학생 개인의료보험으로 의료비를 선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학생본인에게 현금 지급한다. (개정 2004.3.1)

제12조(공상처리한도액) (삭제 2004.3.1)

부 칙

본 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